본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or.kr)에 민원 접수되어 질의 회신된 내용이다. 우리 LPG업계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지식경제부

불법건출물의 보호시설 적용 대상 여부

Q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신청시 보호시설과 안전거리에 관한 규정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주택 등)도 보호시설 적용대상이 되는지와 보호시설에서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어떤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보호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험시설인 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실재하고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동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전소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동 보호시설까지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1)라) 및 16)사)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은 보호시설에 해당하고, 여기서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사람이 상주하거나 작업 등을 목적으로 상시 근무하거나 수시로 출입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적인 사무실, 음식점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별표에 따른 "주택" 또는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관련법령 및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충전소 신규허가 관련

Q 충전소 보호시설과의 거리 중 저장시설,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거리와의 규정 중 그 장소로부터 2배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가 가능한지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시(市)에는 정한 바가 없고 도(道)에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 가목1)라) 및 16)사)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등은 그 외면 등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토록 되어 있고, 허가관청은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관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의 일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면서 시설기준에 대해 시·도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동 충전사업은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허가토록 되어 있음.

사유 도로와 사업소 경계

Q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 가목1)의 규정에서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에서 도로라 함은 개인소유의 도로(사도)가 포함되는지와 사업소경계 내에 사도가 포함되었을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신청시에 동 사도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증명(사용동의서 등)이 필요한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동 지역이 건축물의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아 안전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며, 여기서 도로라 함은 실재하고 있는 도로법 등 관련법령상의 도로를 의미함.

다만, 사도의 경우에는 동 지역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도로이외의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합니다.

위 규정에 의한 도로 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허가관청이 사도법 등 타 법령과 현장의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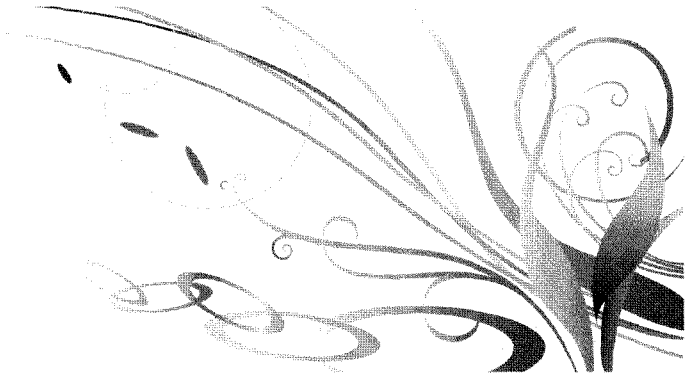

또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자사의 부지중 충전사업소에 귀속된 부지 및 타인의 부지중 법률상 지상권, 임대차, 사용임대 등을 통하여 충전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전소 부지 안에 사도가 있을 경우 동 사도는 충전소 부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LPG차량 소유 장애인 사망시 차량 유지여부

Q 장애인 LPG차량은 장애인 사망시 1년안에 처분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은 바있으나 주위 일부 사람은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사망 시에도 유가족이 LPG 차량을 폐차시까지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사안에 대해 알고자 함

A 장애인 사망시 LPG 연료 사용에 대한 질의로 종전에는 장애인 사망시 1년 이내에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여야 했습니다.

2003. 8. 11일자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동 차량의 폐차시까지 유가족이 소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중개정령을 보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산업자원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산업자원부령 제209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보호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앞으로는 이러한 사용기간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자가 계속하여 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용량 증설에 따른 LPG충전소 허가 관련

Q 1. 현재 부탄20톤, 프로판40톤으로 허가 후 프로판60톤 증설을 하려고하나 보호시설과의 거리 안에 무허가 과일판매점이 있지만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데 이를 보호시설로 봐야 하는지.

2. 보호시설과의 거리 중 무허가건축물 3/2가량만 포함되는데(전체면적120㎡ 부분면적90㎡) 이때 건물전체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포함되는 부분만 면적으로 보아야 되는지.

3. 보호시설로 본다면 무허가부분을 철거하여 100㎡미만으로 했을 시 허가기준에 적법한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을 제2종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에서 보호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가스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물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실재하고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보호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허가관청이 동 규정의 취지 및 구체적인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보호시설의 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충전소내 체력단련 시설 가능여부

Q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부지내에 충전소의 관계자를 위한 체육단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있다면 면적제한은 있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 나목6)라)의 규정에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특정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동 별표 제1호 나목6)라)⑥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11-2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동 규정에서 자동차용기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으로 인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충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소 종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체력단련시설은 충전소 안에 설치되는 충전소 사무실, 종사자 숙소 등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어 충전소 안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시설의 사용은 충전소 종사자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